

	기획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15
		제정일자	2004.09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, 조사연구,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.

1. 장·단기 종합발전계획 및 기본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
2. 기구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학제와 학사행정개선에 관한 사항
4.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5. 교직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전략기획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, 필요에 따라 총장이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서기) 위원회에 위원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8조(조사, 연구의 의뢰)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내외 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(협조요구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업무현황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
2. 관계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위원회 출석 및 의견 개진

제10조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1조(소요경비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,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